

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(황주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855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2. 28.

발 의 자 : 황주홍 · 정동영 · 이찬열

윤영일 · 이채익 · 조경태

이개호 · 이동섭 · 김종회

이종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말산업은 생산에서부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말산업 발전에 있어 말사업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의 목적에 맞는 협회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에서는 말사업자의 협회 등에 대한 설립 규정 및 지원 규정이 없음.

따라서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(안 제25조의2 신설).

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

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협회의 설립 등) ① 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(이하 “협회등”이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

1.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
2. 말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
3. 말산업의 홍보·교육 등에 관한 사항
4. 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
5. 그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

증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25조의2(협회의 설립 등) ① 말</p> <p>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 이익 도모 및 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(이하 “협회등”이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</p> <p>③ 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. 말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. 말산업의 홍보·교육 등에 관한 사항 4. 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 5. 그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<p>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등의</p>

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